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926
----------	------

2024년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4. 5.27
-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4. 5.30
- 상정일자 :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24. 6.20)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24. 6.24)
 -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 의안번호 제1925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등 9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변경안 등 7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예치금을 회수하는 등 재무활동 조정으로 인한 2024년도 수입·지출계획의 변경으로, 총 853억 원의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증액되었음
- 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2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무활동으로 인한 6억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외에, 행정운영경비에서 16백만 원을 감액하고, 정책사업 37백만 원을 편성하고자 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1926호,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2.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가. 제안이유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편성 대비 7,949백만원 증가함에 따라
- 2). 예치금 회수액을 반영하여 2024년 지출계획상 여유자금 예치금을 38,128백만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
- 3).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

- 2024년 수입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 초 (A)	1차 변경 ※ 변경없음	2차 변경 (B)	증 감(B-A) (증감률)
합 계	117,747	117,747	125,875	8,128 (6.9%)
세외수입	1,447	1,447	1,607	160 (11%)
경상적세외수입	1,447	1,447	1,607	160
이자수입	1,447	1,447	1,607	160
공공예금이자수입	1,447	1,447	1,607	160
임시적세외수입	-	-	19	19
기타수입	-	-	19	19
그외수입	-	-	19	19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44,683	44,683	44,683	-
부담금	44,683	44,683	44,683	-
부담금	44,683	44,683	44,683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1,617	71,617	79,566	7,949 (11%)
보전수입등	71,617	71,617	79,566	7,949
예치금회수	71,617	71,617	79,566	7,949
예치금회수	71,617	71,617	79,566	7,949

- 2024년 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초 (A)	1차변경	2차변경 (B)	증 감(B-A) (증감률)
계			117,747	117,747	125,875	8,128 (6.9%)
비용자성사업비(정책사업비) 소계			87,558	87,737	87,737	179 (0.2%)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87,558	87,737	87,737	179 (0.2%)
1	다동공원 조성사업	소 계	87,126	87,126	87,126	-
		시설비	87,108	87,108	87,108	-
		감리비	15	15	15	-
		시설부대비	3	3	3	-
2	세운 5-2구역 내 공공임대상가 건립	소 계	432	611	611	179 (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432	611	611	179 (0.2%)
행정운영경비		소 계	10	10	10	-
	기금 관리비	사무관리비	10	10	10	-
재무활동		소 계	30,179	30,000	38,128	7,949 (26.3%)
	여유자금 예치	일반예치금	30,179	30,000	38,128	7,949 (26.3%)

3. 검토의견

○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가 증가(79억 4,900만원)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1억 6,000만원)과 그 외수입(1,900만원)이 증가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여유자금을 예치하고(79억 4,900만원), 다른 정책사업인 균형발전 기반 제고중 세부사업인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1억 7,900만원)을 증액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표 3-1〉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	당 초 (A)	1 변 차 경	기금운용 계 획 변 경 안 (B)	증 감 (C=B-A)	증 감 륜 (D=C/A)
지출합계	117,747	117,747	125,875	8,128	6.9
균형발전기반제고	87,558	87,737	87,737	179	0.2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도시 재 생 기 금)	87,558	87,737	87,737	179	0.2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87,558	87,737	87,737	179	0.2
시 설 비	87,108	87,108	87,108	-	-
감 리 비	15	15	15	-	-
시 설 부 대 비	3	3	3	-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32	611	611	179	0.2
재무활동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30,179	30,000	38,128	7,949	26.3
보 전 지 출 (균형발전정책과) (도시재생기금)	30,179	30,000	38,128	7,949	26.3
여 유 자 금 예 치	30,179	30,000	38,128	7,949	26.3
행정운영경비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10	10	10	-	-

※ 자료근거 : ①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도시재생기금 지출계획,
②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24. 5.27) 재구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¹⁾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3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이와 연동된 지출계획도 여유자금 예치와 세부사업에 대한 추가재원을 지출계획한 것으로

- 지출계획의 경우, 정책사업인 **재무활동(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은 당초 지출계획(301억 7,900만원)보다 26.3%, 79억 4,900만원을 증액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도시재생기금의 수·지 운용계획을 변경요청한 것으로

-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²⁾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2)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도시재생일반계정)

② 도시재생일반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관리 비용
3.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의 범위안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
7. 사업기간이 종료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8. 도시재생일반계정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비
10. 차입금 및 이자 상환
11.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관련 법령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제출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비용자성사업비(정책사업비)소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인 ①**균형발전 기반 제고**, ②**행정운영경비(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③**재무활동(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으로 기재하지 않고 정책사업의 범주를 임의로 구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제출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2024년 수입계획 변경내용”중 **세외수입**의 합계의 경우, 표기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임시적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의 합계와 세외수입 합계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의회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2.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비용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7조(남산생태여가계정)

② 남산생태여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남산공원 기본조례」제8조에 따른 생태환경 보전 사업의 시행
2. 「남산공원 기본조례」제9조에 따른 여가공간 조성 사업의 시행
3. 남산공원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4. 남산생태여가계정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2.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

가. 소위원회

○ 위원구성 :

- 위 원 장 : 이병도(도시계획균형)
- 부위원장 : 신복자(기획경제), 박승진(주택공간)
- 소위원회 : 구미경(행정자치), 박수빈(행정자치)
김재진(환경수자원), 김규남(문화체육관광)
유만희(보건복지), 김 경(보건복지)
이상욱(도시안전건설), 신동원(주택공간)
박영한(도시계획균형), 이경숙(교통)
정지웅(교육), 전병주(교육)

※ '24년도 본예산 심사시 구성된 소위원회로 계속 운영

나. 소위원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2024. 6.21(금) 15:00 ~ 18: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내 용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

○ 제2차 소위원회

- 일 시 : 2024. 6.22(토) 14:30 ~ 18: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내 용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

○ 제3차 소위원회

- 일 시 : 2024. 6.23(일) 15:00 ~ 2024. 6.24(월) 03: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내 용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

VII. 부대의결 : 「해당 없음」

VI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2024. 6.24)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1926
----------	------

제출년월일 : 2024년 5월 2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편성 대비 7,949백만원 증가함에 따라

나. 예치금 회수액을 반영하여 2024년 지출계획상 여유자금 예치금을 38,128백만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

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

- 2024년 수입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초 (A)	1차 변경 ※ 변경없음	2차 변경 (B)	증감(B-A) (증감률)
합계	117,747	117,747	125,875	8,128 (6.9%)
세외수입	1,447	1,447	1,607	160 (11%)
경상적세외수입	1,447	1,447	1,607	160
이자수입	1,447	1,447	1,607	160
공공예금이자수입	1,447	1,447	1,607	160
임시적세외수입	-	-	19	19
기타수입	-	-	19	19
그외수입	-	-	19	19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44,683	44,683	44,683	-
부담금	44,683	44,683	44,683	-
부담금	44,683	44,683	44,683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1,617	71,617	79,566	7,949 (11%)
보전수입등	71,617	71,617	79,566	7,949
예치금회수	71,617	71,617	79,566	7,949
예치금회수	71,617	71,617	79,566	7,949

- 2024년 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초 (A)	1차변경	2차변경 (B)	증 감(B-A) (증감률)	
계			117,747	117,747	125,875	8,128 (6.9%)	
비용자성사업비(정책사업비) 소계			87,558	87,737	87,737	179 (0.2%)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87,558	87,737	87,737	179 (0.2%)	
	1	다동공원 조성사업	소 계	87,126	87,126	87,126	-
		시설비	87,108	87,108	87,108	-	
		감리비	15	15	15	-	
		시설부대비	3	3	3	-	
	2	세운 5-2구역 내 공공임대상가 건립	소 계	432	611	611	179 (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432	611	611	179 (0.2%)	
행정운영경비			10	10	10	-	
	기금 관리비	사무관리비	10	10	10	-	
재무활동			30,179	30,000	38,128	7,949 (26.3%)	
	여유자금 예치	일반예치금	30,179	30,000	38,128	7,949 (26.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균형발전정책과 균형발전정책팀 김유림 (☎2133-8614)